

外國의 農水産物市場 現況

-자료제공 : 외교통상부, 무역일보-

미 국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미국의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은 총 402.3억 달러 규모임. 주요 수입품목은 과일·채소류, 빵류, 토마토, 피망류, 커피, 냉동새우, 에틸알콜, 맥주, 필렛류, 바나나, 담배원료 등임
- 주요 품목별 수입대상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일·채소류 :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고, 칠레, 멕시코 등의 수입.
 - 커피 :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등 주로 중남미국가
 - 냉동새우 :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에쿠아도르, 멕시코이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도 있음.
 - 에틸알콜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스웨덴, 아일랜드로부터 수입
 - 맥주 : 주로 네델란드, 멕시코, 독일로부터의 수입
 - 필렛류 :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주 수입국
 - 바나나 : 코스타리카, 에쿠아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국가로부터 수입
 - 담배원료 : 주로 브라질, 터어키로부터 수입
 - 빵류 : 캐나다, 멕시코가 주 수입대상국이고, 벨기에, 덴마크, 영국, 독일 등 구주국가로부터

터의 수입도 있음

- 토마토 : 캐나다와 네델란드가 주 수입대상국이며, 스페인, 이스라엘, 벨기에 수입.
- 피망류 : 주로 멕시코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네델란드, 캐나다, 이스라엘로부터도 수입되고 있음

2. 미국의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현황

-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농수산물은 국수류, 오징어, 음료류, 개, 과자류, 굴, 스프류, 주류, 인삼뿌리, 건어물, 밤, 필렛류, 차류, 배, 고추 등임
- '98년 상반기 우리나라산 수산물의 對美수출 총액은 전년 동기의 10,905천 달러에서 76% 이상 급감하여 2,606천 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96년의 5,653천 달러보다 54% 정도 하락한 수준임.
 - 특히, 냉동어류 및 필렛류의 수출감소가 두드러져 수출량 및 금액 모두 하락
- 가공식품의 경우 수출량은 증가하고 수출금액은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
 - 국수류의 경우 '98년 상반기 총수출액이 10,485천 달러로 전년동기의 150,972천 달러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수출물량은 4,468천kg에서 5,239천kg으로 17.3% 증가
 - 스프류의 수출액은 '98년 상반기 2,454천달러로 1.41%의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수출물량은 830,590kg으로 10.35% 증가

〈한국산 주요식품의 對美 수출 현황('98.1~5)〉

	수출물량(kg)			수출단가(\$/kg)			수출액(천달러)		
	'97	'98	증가율(%)	'97	'98	증가율(%)	'97	'98	증가율(%)
국수류	3,819.9	4,461.6	16.8	2.40	2.00	-16.7	9,152	8,927	-2.5
스프류	604.2	655.8	8.5	3.11	2.90	-6.8	1,879	1,904	1.3
인삼뿌리	13.2	25.0	88.9	112.84	49.56	-56.1	1,494	1,239	-17.1
과자류	824.2	925.2	12.3	3.02	2.60	-13.9	2,489	2,401	-3.5
차	18.5	21.6	16.8	40.55	9.87	-75.7	749	213	-71.6
오징어 (냉동건조, 염장)	2,287.2	3,622.6	58.4	1.88	1.05	-44.2	4,302	3,786	-12.0

3. 우리나라산 농수산물의 對美 수출증진 가능성

- 현 수출품목 : 감귤, 배, 밤
- 수출타진 가능품목 : 토마토

가. 감 귤

(1) 미국산 감귤류 현황

(가) 생산 동향

- 최근 5개년 생산실적

(단위 : 1,000톤)

구분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총생산량	247	318	287	349	418	360
아리조나	35	37	25	38	21	23
캘리포니아	79	86	94	98	98	90
플로리다	133	195	168	213	299	247

* 자료원 : USDA/NASS, Crop Production

* 주 : ①가공용생산량 기준(총생산량에서 수확되지 않은 양과 경제 여건상 판매되지 않은 양 제외)

②'97/'98 생산량은 '98.7.1 추정치

(나) 소비동향

- 자몽 등 먹기 불편한 과일의 소비자 직접 구매는 감소 추세
- 껍질을 벗기기 쉽고 씨가 없어 먹기가 간편한 점으로 인해 만다린 등 작은 감귤류의 소비가 확대 추세
- 먹기 편리한 점, 일회용으로 알맞은 작은 크기로 학생 점심 등 휴대용 간식으로 애용

(다) 만다린 수입 동향

- '95년 이후 만다린류의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96년에는 전년대비 65.69%, '97년에는 6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97년의 스페인산 수입액은 전년대비 58.66% 증가한 42,373천불로 전체 수입액의 89.4%를 점유하며, 이는 855천불에 해당하는 한국산의 약 50배에 달함.

(단위 : 천달러)

구분	연간			1~6월		
	'95	'96	'97	'96	'97	'98
전세계	17,817	29,521	47,412	6,408	11,813	9,722
스페인	15,234	26,724	42,373	5,952	10,679	8,392
멕시코	1,668	1,219	1,475	270	672	348
호주	2	366	1,187	0	0	0
한국	80	330	855	0	0	409
모로코	27	328	605	66	22	0
일본	479	345	323	0	0	0

*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2) 한국산 감귤수입 현황

(가) 유통경로

○ 유통경로

제주→부산항→시애틀항 수입업자→서부 및
동부지역 분배업자→소매업체

○ 단체별 특이사항

- 서부 시애틀항에 도착, 통관시설이 크리스마스 전후의 성수기로 동부로의 트럭운송시 차량부족, 항공운송 등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나) 타국산과의 경쟁력 비교

○ 가격

〈원산지별 평균 수입가격 비교〉

(단위 : 미달러/kg)

원산지	평균 가격		
	'95	'96	'97
스페인	1.08	1.16	1.22
멕시코	0.44	0.47	0.35
호주	1.33	0.99	1.04
한국	1.29	1.54	1.08
자메이카	0.37	0.34	0.46
일본	2.40	2.10	2.55

〈한국·스페인산간의 가격비교〉

(단위 : 미달러)

원산지	포장규격	시기	도매가격	소매가격
스페인	2.5kg	출하첫주	7.50~9.00	14.99
		성수기	5.50	9.99
		덤핑기	2.50	4.99
	10kg	출하첫주	28	35~39.99
		성수기	10~11	29.99
		덤핑기	8	19.99
한국	2.5kg	전체	마진율 20~30%	12.99~6.99
	5kg	전체		20.99~13.99

※ '97년 한국산 수입시기가 스페인산의 성수기와 맞물려 있었으며, 신선도 하락으로 가격 덤핑 추세

○ 품질

- 부드러운 껍질, 단맛, 풍부한 과즙 등 한국산 감귤의 맛은 최고 수준이나 소비시장 도착까지의 긴 통관 및 유통기간으로 인해 감귤류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선도 하락

- 산지에서 현지 시애틀에 도착하여 검역에 적발되어 재심사를 거쳐 통관되기까지의 3개월여의 긴 시간 및 Cooling System 등 기간시설의 미비로 신선도 유지에 실패

○ 수입시기의 조절

- 스페인산 클레멘타인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는 추수감사절(11월 넷째주) 이전에

(다) 수출상 문제점 및 수출확대 방안

○ 신선도 유지

시장을 우선 점유하여 크리스마스 와 신년 까지 시장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큼

○ 포장의 개선

- 통기성 및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선하여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원형보전 필요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고 운송중 Pallet 쌓기에 용이한 디자인으로 포장용기 현대화 필요
- 가격 및 용량이 부담스럽지 않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포장용기의 소형화 요망

○ 유통과정상 문제점

- 지난 3년간 제주 감귤을 수입한 업체가 해마다 틀려 수입 및 유통과정상의 전문성 발휘와 통관, 유통 등 전 과정에서의 노하우 축적 실패, 현지 전문 분배업자와의 독점적 계약 체결, 고정 거래선 확보 필요

- 분배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소화 가능한 물량을 들여와 최상의 상품을 제값을 받고 판매하여, 물량과다로 인한 판매부진, 품질저하, 가격 하락 등 상품 이미지 추락 요인을 방지하고 단계적 시장 확장 전략 구사

○ 미국내 일차 농산물 국제박람회 참가

- 10월 중순경에 열리는 PMA(Produce Marketing Association) 주최 농산물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시식코너를 마련 도매업자, 중개인,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 맛 체험을 통한 홍보 및 판촉 활동

나. 배

- '95년 이후 배의 수입물량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97년의 수입물량은 2년 동안 86.3% 증가
- 한국산의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음.

(단위 : 천달러)

구분	국가별	연 도 별			1~5월		
		'95	'96	'97	'96	'97	'98
수출	합 계	87,705	97,050	93,666	39,155	33,287	41,280
	캐나다	42,163	46,410	45,671	20,677	20,593	20,917
	멕시코	13,206	16,540	17,274	7,970	6,472	12,727
	브라질	9,614	7,995	7,747	37	118	0
	네덜란드	2,150	567	3,875	84	72	338
	스웨덴	1,874	1,775	3,362	243	448	732
수입	러시아	702	2,518	2,664	1,000	1,121	1,096
	대만	6,139	5,358	2,053	2,919	806	806
	합 계	27,085	34,091	50,446	28,248	44,217	38,200
	아르헨티나	7,282	10,261	21,123	9,895	20,908	21,622
	칠레	9,393	15,665	18,537	14,360	17,442	9,469
	뉴질랜드	2,232	1,887	3,100	1,608	3,080	3,853
일	한국	2,254	2,595	2,952	92	47	169
	남아공화국	4,122	2,231	2,644	2,231	2,446	3,024
	일본	1,572	1,213	1,134	48	0	0

다. 밤

- '95년에서 '97년까지 3개년間に 있어서 미국 내 연간 밤 수입량은 9,779천달러, 10,581천달러, 10,903천달러로 각각 8%, 3%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 한국산의 경우는 0.875백만달러, 897천달러, 1,459천달러로 각각 점유비율 9.0%, 8.5%, 13.4%를 기록하는 등 그간 미국내 수입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온 이태리산

밤의 비중을 74.3%로 끌어내리고 13.4%의 시장 점유

※ 이태리산은 8,142천달러, 8,700천달러로 연도별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83.3%, 82.2%, 74.3%로 감소 추세

라. 토마토

(1) 미국산 토마토/채소류 현황

(가) 미국산 토마토 생산 및 출하 동향

〈신선 토마토 생산동향〉

연 도	파종면적 (에이커)	수확면적 (에이커)	산출량 (cwt/에이커)	총생산량 (천 cwt)
'93	138,390	134,650	264	35,599
'94	139,780	136,020	276	37,582
'95	136,910	132,820	260	34,535
'96	128,710	124,640	277	34,564
'97	129,180	125,370	302	37,809

- '93년 이후 신선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총생산량은 증가추세로 단위당 산출량이 '9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하여 '97년에는 기록적 산출량 보임.
- '98년 초봄 플로리다 지역의 폭우 및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토마토, 오이, 피망 등의 작물이 성장저하 및 산출량 감소 현상 초래
- 공급량 부족 및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멕시코산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 수급 해결 전망
- 플로리다산은 5월(시장의 60% 점유), 6월(40%), 캘리포니아산은 7월(60%)이 성수기

(나) 가격동향

〈신선토마토 생산자 가격〉

(단위: 미달러/cwt)

연 도	생산자 가격
'93	31.70
'94	27.40
'95	25.80
'96	28.00
'97	33.00

〈신선/냉장 토마토 수입 평균가격〉

(단위: 미달러/kg)

구 분	'95	'96	'97
전세계	0.73	0.91	0.87
멕시코	0.68	0.85	0.78
캐나다	1.49	1.72	1.57
네델란드	1.70	1.82	1.57

- 멕시코산의 수입가격은 2, 3위 수입국인 캐나다와 네델란드의 절반 수준
- 소매가격
 - 미국산 및 멕시코산 일반 토마토 : 파운드당 0.79~0.99달러
 - 체리토마토 : 12온스당 12.9달러
 - 네델란드 토마토 : 개당 0.79~0.99달러

(다) 유통/소비 동향

- 토마토 소비가 '97년 신선채소의 소비량 증가 및 가공채소의 소비량 감소에 주 역할을 함.
 - '97년에 신선채소류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4%가 증가하여 일인당 161파운드에 이르렀고, 신선 토마토의 소비량이 최고를 기록
 - '97년에 있어서 가공 채소의 일인당 소비량은 2% 하락하여 126.4파운드, 캔가공 채소류 사용량은 1% 하락한 103.9 파운드임.
- 신선 토마토의 1인당 소비량은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에는 19파운드 기록
- 일반 토마토 및 크기가 큰 홀랜드 토마토는 서양요리의 재료, 햄버거 및 샌드위치의 내용물로, 체리 토마토라 불리는 작은 크기의

토마토는 샐러드에 사용

- 슈퍼마켓 및 청과상에서 주로 구입
- 12온스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체리 토마토, 줄기가 달린 온실재배 토마토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인기 상승중

(라) 수입 동향

- 미국의 신선채소 수입은 기본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중앙아메리카 각국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추세는 점점 더 강화
- 새로운 노지재배 품종의 개발 및 온실재배/수경재배 토마토의 수입 급증이 토마토업계의 새바람
- 토마토 수입은 멕시코, 캐나다, 네델란드 순으로 97년의 경우 3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의 약 97% 차지
 - 이중 멕시코산이 517백만달러로 전체의 79.7% 차지
- 네델란드산, 이스라엘산 등은 줄기가 달린 온실재배 토마토, 체리토마토 등 고가치 작물이 주류

〈신선/냉장 토마토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거 래	국 가	'95	'96	'97
수 입	전세계	450.494	672.491	648.677
	멕시코	406.092	580.371	517.049
	캐나다	17.407	37.408	58.966
	네델란드	21.097	42.646	52.918
	한 국	0.000	0.000	0.000

* 자료원 : WTA

○ 현재 한국산 토마토의 미국내 수입 물량은 없으나, 고가작물 위주로 수출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 의견임.

○ 미국산 토마토의 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최근 동남아 경제 사정으로 악화되고 있는바, 현재가 한국산 토마토의 해당 지역으로

의 수출 호기로 볼 수 있음.

마. 가공식품

- 한국산 가공식품은 한국계 시장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유통되고 있으며 타민족 시장 진출품목으로는 라면, 과자류, 국수류, 인삼제품 등 소수품목, 소량에 불과
- 현지화 가능 품목에 대한 포장개선, 홍보 등 집중적 지원 및 한국식문화 전파로 수요의 저변확대 작업을 병행하여 단계적 시장진출 전략 필요
- 현재 한인마켓에서 잘 팔리는 품목 및 수출확대 가능품목
 - 국수류, 차류, 개맛살, 미역(건조, 염장), 김, 간장, 생선묵, 만두류, 참치통조림, 라면, 인삼제품, 과자류
- 현지화 유망품목
 - 인삼제품, 간장, 차류를 포함하는 건강식품 등

4. 對美 농수산물 수출상의 애로사항

가. 세관별 자의적 통관절차 시행

- 미국의 일선세관에서 원산지 확인, 구성성분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켜 과도한 통관비용이 발생되고 신선냉장물품이 부패,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사례로서 로스앤젤레스 세관이 한국산 마늘에 대하여 중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험을 함으로써 마늘 전량을 폐기한 사례가 있고, 뉴욕에서는 한국산 인삼드링크의 알콜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개월 이상 통관을 지연시킨 사례도 있음

나. 제주도 감귤에 대한 美 5個州 반입금지

- 미국정부는 '95.8월 한·미간 식물검역요령

(Work Plan)에 의해 금지병해충(감귤계양병)에 대한 검역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제주도 감귤수입을 허용하였으나 감귤 주 생산지역인 미국내 5개주(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리조나, 루이지애나, 텍사스)는 제외되었음.

- 검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5개주에 대해서도 반입의 허용이 요망됨.

다. 삼계탕 수입금지

- 우리나라 삼계탕은 평균(121℃에서 60분간 평균 압착)된 것이므로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의 전파가능성이 없음.
- 더욱이 우리나라는 뉴캐슬병의 非發生國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에도 假輸出중에 있음.
- 미국정부측은 한국의 위생관리 체계가 미국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작업장 위생수준이 미국측 요구조건에 합치되어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구체적으로 삼계탕 원료인 닭의 도축, 위생처리, 가공을 하는 국내관련 규정과 지침이 제도적, 현실적으로 미국측의 위생관련 규정(HACCP)과 상응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5.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가. 농산물 검역절차

- ① 공식요청(문서) : 美대사관 등의 외교채널을 통해 USDA에 공식 요청
- ② USDA의 최초 검토 : USDA 규정과의 합치 여부 검사
- ③ 현지검토 : USDA 검역관 수출국 현지 위생사항 검토

- ④ 수입허가 거부결정 : 수입허가서 USDA 농산물 수입허가 국가리스트에 산입
- ⑤ 수입허가서 발급 : 수출지 주재 현지검역관의 검사필증
- ⑥ 수출포장 검사 : 수출지 주재 현지검역관에 의한 라벨링, 포장상태, Product Cormulation 검사
- ⑦ 선적전 검사 : USDA 현지검역관이 수출국 직원과 공동으로 수량, 품질상태 등 기타사항 재확인 검사
- ⑧ 수 출

나. 관 세

- 무세에서 35%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신선품 보다는 가공품에 대하여 보다 높은 세율을 책정하고 있고,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제세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관세청 소관임.
- 1,250달러를 초과하는 상품수입은 정식신고가 요구되며, 상업용 직물의 수입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 정식신고가 요구되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도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수입자는 물품도착후 5근무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수입 절차는 세관서식 3461과 송품장 1부를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시작되며, 이때 세관 검사직원은 물품의 반출전액 심사 및 서류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ACS(Automated Commercial System)에 조회함.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세관검사 직원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후 수입자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물품을 반출함. 수입자는 화물 반출 후 10 근무일 이내에 정산신고서(세관서식 7501) 제출 및 관세를 납부함.
- 물품의 관세법 위반사실이 추후에 발생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관세납부 및 물품의 재

인도를 확보할 목적으로 관세사 및 수입자로부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담보에 의거 최종결정 및 적절한 관세납부 이전에 물품의 반출을 허용

<주요 농산물 품목별 관세율('96)>

HS 번호	품목명	관 세 율
07095100	신선버섯	kg 11℄
07108020	냉동버섯	kg 7.1℄+10%
07119040	버섯(일시처리)	kg 7.1℄+10%
08081000	사 과	무 세
08082020	배(4.1~6.30)	무 세
08082040	배(기타 시기)	kg 1.1℄
20097000	사과 주스	무 세

다. 수량제한

- 농업조정법(1933년 제정, 1979년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미 관세청이 특정기간동안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수량을 통제하는 수입 규제조치를 발동함. 주로 낙농, 땅콩 및 설탕 제품이 해당되어 우리나라는 해당사항이 적은 편임.
- 쿼타제한에 해당하는 상품의 수입신고는 본부 세관의 승인이 요청됨(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6:30 시간중 허가). 세관은 쿼타상품의 통관도 24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향상시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세관관세사는 ABI를 통하여 화물도착 60일 전에 수입신고를 전송할 수 있음.
- 도착전 5일 이전에는 세관이 운송기관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화물이 이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세관검사가 요구되지 않아 반출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반출일자는 도착일이 됨. 임시반출은 항공화물에 대해 그 화물을 선적한 항공기가 외

국에서 이륙된 후에 허용

라. 미 농무부(USDA) 및 보건후생부(FDA) 각종 동·식물검역

(1) 통관제도 개요

- 과일, 채소, 육류 등 부패성 화물은 잡화물보다 우선하여 검사하며, 일반적으로 수입과 실이나 채소류 수입물량의 2%를 임의 표본 수출 검사를 실시함.
- 이를 위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INVOICE, PACKING LIST)외에 Food, Drug and Cosmetic Act, The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특별표기 또는 증명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FDA, 농무부와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식품, 과일류, 채소류, 육제품, 유제품, 가금제품, 동물 및 동물제품, 알콜음료 등의 수입시 FDA와 농무부의 별도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공식품의 경우 항구나 공항에 화물이 도착하기전 US CUSTOMS SERVICE와 USDA, FDA에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절차를 마치게 됨. US CUSTOMS SERVICE에서는 관세를 결정하고 USDA 및 FDA에서는 상품의 수입허가를 결정하는데, 그 소요기간은 정상적인 경우 1~2일이면 가능하나 뉴욕의 경우 일손부족으로 4~7일정도 소요됨.
- 통관을 빨리하기 위해서는 통관서류 제출시 관련된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LOW ACID 식품중 CAN 제품은 FCC와 PROCESSING FILE을 제출하면 되고 모든 식품의 INGREDIENT SHEET를 제출하면 통관이 용이함.

(2) FDA 관련품목 수입절차

- ENTRY SUMMARY(CF7501)를 작성하여 미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가액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미관세청 규정에 의거 수입자는 관세, 조세, 벌과금 등의 정수에 대비하여 BOND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함.
- 수입품이 FDA의 제한품목인 경우 수입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입업자는 미 세관에 FDA 701을 제출하거나 기타방법을 통해 FDA에 반입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상업장도 함께 제출되어야 함(FDA 통보요건은 \$1,000이하의 수입물품에도 적용됨).
- 수입업자가 통관법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서류의 작성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 미 세관에 모든 서류가 제출되면 세관은 FDA 규정과 관련된 서류를 FDA에 송부하게 되고 FDA는 이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
- FDA는 수입물품을 검사없이 통관시키거나 샘플을 채취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물품이 세관에 반입된 후 통관이 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물품에 따라 다양하며, 일단 반입된 물품은 FDA 담당자가 서명한 "MAY PROCEED NOTICE"나 "RELEASE NOTICE"가 발행되어야만 반출 가능
- 미 세관은 "MAY PROCEED"나 "RELEASE NOTICE"를 발행하기 전에 수입품을 창고나 적절한 장소로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수입품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MAY PROCEED NOTICE" "RELEASE NOTICE" 없이 상품을 유통시키

면 예치된 채권에 대한 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3) 수입통관 촉진방안

- 포장식품의 경우 표지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된 상품은 의무적 표지정보의 결여로 인해 불가불 억류되어 통관 지연을 초래하게 되므로 완전한 표지가 필요
- 반입항의 적하가 도착되는 즉시 미 세관에

반입신청을 해야하며 반입서류는 특정 사무소의 FDA 대표자의 주의를 위해 표시(flagged)해 놓아야 함.

- 한국산의 통관보류 사유는 제품의 불량이나 규격미달 보다는 FDA 등록 및 라벨부착 미비 등 미세한 규정이나 절차숙지의 미숙으로 초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숙지가 對美 수출시의 필수요건임.

<참 고>

(농수산물의 주요 품목별·국별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주요수입국	'95	'96	'97
커피 (0901)	소 계	3,084	2,605	3,727
	콜롬비아	529	502	772
	멕시코	569	541	637
	브라질	422	255	459
	과테말라	319	260	407
냉동새우 (030613)	소 계	2,340	2,137	2,557
	태국	786	619	603
	에쿠아도르	443	370	582
	멕시코	341	325	369
	인도네시아	56	106	148
	방글라데시	66	110	132
필렛류 (0304)	소 계	1,173	1,158	1,300
	캐나다	178	196	217
	칠레	76	116	169
	아이슬란드	166	157	161
	중남미	106	122	130
	뉴질랜드	139	120	99
에틸알콜 80%이하 (2208)	소 계	1,844	2,045	2,186
	영국	571	625	653
	프랑스	385	429	465
	캐나다	308	341	341
	멕시코	117	135	159
	스웨덴	116	144	154
	아일랜드	113	129	141
	한 국	2	2	2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주요수입국	'95	'96	'97
맥 주 (2203)	소 계	1,163	1,315	1,493
	네델란드	444	487	534
	멕시코	239	307	418
	캐나다	188	200	187
	독일	114	114	120
	영국	64	76	85
	일본	16	17	18
	한국	2	2	2
바나나 (0803)	소 계	1,119	1,162	1,195
	코스타리카	301	314	301
	에쿠아도르	289	252	289
	콜롬비아	176	141	176
	온두라스	146	166	146
	과테말라	131	151	131
담배원료 (2401)	소 계	555	1,053	1,129
	브라질	136	285	294
	터키	189	279	286
	아르헨티나	18	61	74
	말라위	33	57	73
	한국	0	10	0
과일·채소주스 (2009)	소 계	656,885	994,461	882,687
	아르헨티나	121,210	170,885	163,984
	브라질	114,915	218,798	152,108
	칠레	42,390	70,891	64,302
	독일	71,252	90,043	60,503
	멕시코	81,499	76,361	67,418
	캐나다	14,557	26,772	47,151
	필리핀	32,415	29,405	35,449
	대만	32,721	45,098	34,194
	한국	0.459	0.344	0.589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주요수입국	'95	'96	'97
빵 류 (1905)	소 계	627,879	688,233	743,280
	캐 나 다	270,409	297,397	314,506
	멕시코	77,798	93,008	100,292
	벨기에	31,655	34,613	43,831
	덴마크	42,545	39,388	42,865
	영국	28,986	30,076	31,289
	독일	25,252	26,450	30,178
	이탈리아	25,514	24,210	27,976
한 국	5,693	5,969	6,601	
토마토 (0702)	소 계	450,494	672,491	648,740
	멕시코	406,092	580,371	517,102
	캐 나 다	17,407	37,408	58,966
	네델란드	21,097	42,646	52,918
	스페인	1,982	3,879	7,836
	이스라엘	1,100	3,804	6,686
피망류 (070960)	소 계	241,699	216,983	256,682
	멕시코	175,813	157,094	186,824
	네델란드	49,623	43,174	42,591
	캐 나 다	11,271	11,483	18,019
이스라엘	1,934	2,441	5,493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품 목	1~6월 수입액	국 별 수 입					
		한 국	캐나다	일 본	멕시코	중 국	대 만
		'97/'98	'97/'98	'97/'98	'97/'98	'97/'98	'97/'98
국 수 류	150,912	10,601	16,002	6,729	8,027	5,172	5,508
	166,112	10,485	32,878	7,128	7,164	6,812	5,129
스 프 류	43,320	2,420	16,097	4,705	4,662	348	317
	48,821	2,454	22,048	4,421	4,709	304	497
음 료 류	1,084,405	4,306	126,293	7,889	37,787	653	3,913
	1,209,137	3,444	134,900	8,060	40,353	2,024	3,905
전 분	26,530	48	7,993	173	1,240	617	39
	25,130	23	8,211	40	1,598	452	107

(단위 : 백만달러)

품 목	1~6월 수입액	국 별 수 입					
		한 국	캐나다	일 본	멕시코	중 국	대 만
		'97/'98	'97/'98	'97/'98	'97/'98	'97/'98	'97/'98
인삼뿌리	6,066 6,126	1,531 1,497	306 484	99 105	12 0	1,804 3,288	0 0
주 류	1,685,595 1,819,863	1,694 1,556	254,707 284,100	9,111 8,940	283,213 323,647	3,347 3,976	87 95
절 임 류	51,960 61,608	378 146	4,340 5,278	490 405	25,712 31,134	218 1,056	89 113
검	48,420 48,100	346 134	25,684 25,939	522 426	14,956 15,577	210 459	71 2
과 자 류	298,720 342,152	3,003 2,985	144,216 160,168	7,669 9,066	48,528 52,816	2,191 2,113	4,596 4,265
머 섯 (건조)	11,365 10,238	242 90	50 119	3,494 3,151	0 3	4,380 4,112	58 126
새 우	985,133 1,220,347	15 9	5,871 7,184	5 0	85,810 139,123	11,586 14,427	913 266
계	86,495 144,142	7,478 3,159	1,542 647	1,542 647	3,440 1,751	1,743 668	0 56
밤	448 906	85 567	0 0	0 5	0 0	170 63	0 0
고 추 (향신료)	110,961 131,845	220 150	54 24	21 30	6,720 10,168	7,600 6,669	95 50
배	45,818 41,642	47 169	49 27	0 0	0 19	0 17	0 0
곡물제품	569,090 508,926	50 48	381,668 272,626	144 146	1,731 2,717	359 81	27 10
차 류	66,708 93,262	758 223	470 374	1,223 1,312	43 27	10,946 13,779	1,234 1,366
담 배	210,323 242,738	232 16	11,461 17,070	6,078 8,034	10,309 4,447	144 283	12 9
필 렛 류	615,805 695,507	3,022 245	100,903 104,332	9,195 8,825	3,615 3,100	59,552 64,293	11,219 18,597
굴	7,254 5,005	4,747 2,903	1,168 1,162	896 506	70 96	20 68	0 0
오 징 어	41,517 36,457	4,885 4,218	222 953	2,515 1,458	688 232	4,990 7,292	9,020 6,175
건 어 물	57,027 57,382	1,475 1,443	32,894 34,503	3,098 2,150	613 389	965 949	73 124
기 타	21,608,135 2,347,783	35,689 35,852	7,725,480 8,130,258	152,037 94,432	2,297,569 2,617,345	475,946 552,166	192,521 215,783
농림축수 산물전체	27,812,007 29,264,229	83,269 71,816	8,867,087 9,249,717	217,665 241,076	2,834,745 3,256,415	592,961 685,351	229,792 256,765

* 자료원 : WTA

뉴질랜드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호주와 북미 지역에서 수입해 옴. 이는 지역적 근접성(호주), 농수산물 가격 및 다양성(미국)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뉴질랜드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23백만 뉴질랜드 달러(118백만 미달러)정도임. 이는 인구 370만명의 비교적 작은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낙농국가로서 농축산물수출이 총수출의 4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로 곡물, 채소, 과일류만을 수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뉴질랜드 농산물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뉴달러)

	북미	호주	기타	총수입
곡 물	20	34	1	55
채 소	0.7	18	12.3	31
과실류	89	25	22	137

* 1뉴달러 = 0.53미달러

2. 우리나라산 농수산물의 對뉴질랜드 수출증진 가능성

- 한국의 對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액은 '97년 289만뉴불, '98.1~6월 92만 뉴불 정도임. '98년 통계에 의하면 對뉴질랜드 농산물 수출액의 85%가 농산물 가공품임.
- 현재 우리 수출유망품목은 과실류와 농산물 가공품임.
 - 과실류 : 현재 수출실적은 없으나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리적으로 남·북반구에 각각 위치하여 계절적인 상호보완성이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임. 현재 키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과 뉴질랜드 키위(Zespri라는 국가상표를 갖고 있음)간 경작기술 교류와 판매망 공유 등 제3국 수출방안을 협의중임. 또한 국산 사과와 배도 향후 수출유망품목으로 보이지만, 우리 과실이 질적으로 훨씬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주재국산 사과 및 배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현지과일취급상의 의견임.

- 농산물 가공품 : 현지 우리나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수입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뉴질랜드인들도 최근 아시아 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임. 농산물 가공품중 수출유망 품목으로는 면류(라면등), 과자류, 장류, 조미료, 인삼, 담배 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뉴달러)

	'97	'98.1~6
축 산 물	100	2
조제농산식품	2,490	792
기 호 식 품	299	133
총 계	2,896	929

3.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평균 8.5%임.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2001년까지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완전 철폐 예정임.
- 식품위생규제 : 뉴질랜드 농림부 소속 규제기관(Regulatory Authority)에서 식품첨가물, 동·식물 검역등을 심사하여 허가증을 교부함. 따라서 신규 농산물에 대해서는 동 기관의 사전 심사신청을 통하여 허가증을 받는 것이 좋음.
- 농림부 규제기관 연락처 :

기관장 Dr. Andrew Mckenzie

Tel : 64-4-4100, Fax : 64-4-4111

- 수입할당제 유무 : 뉴질랜드는 수입자유화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수입할당제가 존재하지 않음.

4. 우리나라산 농수산품의 對뉴질랜드 수출관련 애로사항

가. 우리나라산 마요네즈 수입중단

(1) 현황 및 문제점

- 뉴질랜드 관세청은 농수산부가 제정한 원칙에 따라 통관을 중지시켰다고 하며, 농수산부는 마요네즈에 사용되는 계란에 Newcastle, Salmonella pullorum, S.gallinarum 등의 병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전에 농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는 검사과정을 거쳐 수입되고 있으나 여타국가로부터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함.

(2) 뉴질랜드 농산물 관련 규정

- 뉴질랜드 농수산부는 Biosecurity Amendment Act 1997에 따라 Import Health Standard For The Importation Into New Zealand Of Specified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Containing Dairy Products, Eggs Or Meat(IHS)를 제정하였음.
- IHS에는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의 마요네즈 수입을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한국산 마요네즈 수입금지 사유 및 해제방안

- 한국산 마요네즈가 수입금지된 것은 한국산 마요네즈에 대한 위험분석(Risk Analysis)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임.
- 한국산 마요네즈에 대한 검사(Biosecurity Clearance)를 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검

역담당관(Korea's Chief Veterinary Officer)이 뉴질랜드 검역담당관에게 공식요청하여야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음.

나. 우리나라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내 유관기관의 검사 불인정

- 어묵 등 한국산 수산가공식품 통관시 현지검사를 하게 하고 검사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있음.
- 호주, 영국 등 많은 나라의 경우 해당국 유관기관의 검사결과 첨부시 현지검사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한국산은 현지검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어묵, 맛살 등의 부문은 한국상품의 대외적인 성가가 높으므로 이에 합당하게 한국유관기관의 검사서로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현지검사를 가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5. 기타 참고 사항

- 뉴질랜드 농림부에 의하면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입에 대해 정부가 일체 간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시장 동향에 대하여 정부가 정보수집이나 분석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함.
- 뉴질랜드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시장 정보 수집과 유통망 구성을 위해서는 在뉴해외한인무역인회(정우진 회장, 박근수 운영위원 Tel : 64-9-818-5188, Fax : 64-9-818-6311)등 뉴질랜드 한인수입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함.

파푸아뉴기니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파푸아뉴기니의 전체인구 430만명 중 약85%

가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이들은 대부분 자급 자족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발전과 주민 식생활 수준 향상이 진전됨에 따라 쌀, 고기, 어류 및 과일 등 식품소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음.

- 반면, 농수산물의 국내생산은 일조량 및 강우량이 풍부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급자족 식생활 및 인근 농업선진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로부터의 원활한 수입 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따라서, 커피, 코프라, 코코아, 팜오일, 차 등을 주요 환금작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대신 쌀, 고기, 우유 등의 식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파푸아뉴기니는 '90년 이래 교역통계 중 수입품 구성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농수산물 수입수요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가 발간하는 자료 등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 총 수입중 농수산물 비중이 약 20%이내인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97년 농수산물 수입규모는 약 285백만 달러(425백만 키나)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
- 주요 수입국은 역시 지리적 환경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이며 한국으로부터는 최근 라면등 인스턴트 식품등이 소량 수입 판매되고 있음.

2. 우리나라산 농수산물의 對파푸아뉴기니 수출증진 가능성

- 현재 라면등 인스턴트 식품이 소량 수입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층이 한국, 일본인 등 외국인 위주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는 현지인 유사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불리하기 때문에 획기적 증진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유망품목으로 과일 특히 사과 및 배 등을 품질차별화 측면에서 추천할 수 있음.
- 쌀, 고기, 곡물 등은 인근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품에 비해 우선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울 것임.

3.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 파푸아뉴기니는 농수산물 수입에 평균 10%선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별 국가별 차등을 두고 있기도 함. 특히, 국가별 차등관세는 양국간 개별협정 등에 근거하며 남태평양 지역 국가간에 그 사례가 많음.
- 식품위생규제와 관련하여 파푸아뉴기니 식물 검역소는 농산물 수입시 해당 생산국 검역소와 사전 개별협정 또는 실사확인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그 밖에, 수입할당제등의 규제장치는 없음.

4. 농산물 수출관련 유의사항

- 사전관세 및 검역(Quarantine)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파악한 후 교역상담을 시작해야 함. '97년도 한국산 담배가 수입되었으나 수입업자가 관세 계산의 착오로 동 담배수입 통관을 포기함에 따라 동 담배는 관세청에 의해 전량 폐기 처분된 적이 있음.
- 해상운송 및 환적, 통관 등에 장시간 소요됨을 고려하여 보관, 포장 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캐 나 다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캐나다의 농업 및 식품시장은 연간 9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서비스 포함)임. 또한 캐나다

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55억 캐나다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98년 기준)하고 있는 수출국임.

- 식품산업은 GDP의 약 9%를 점유
- 농수산물 수출입은 '98년 기준으로 수출 228억 캐나다 달러, 수입 173억 캐나다 달러 규모임.

- 주요 농수산물 수입품목류는 '97년 기준으로 커피·코코아·차(21억C\$), 과일(14억C\$), 육류(10억C\$), 음료수(10억C\$), 야채(9.7억C\$), 설탕류(9.7억C\$)이며, 품목별로는 커피(5.2억C\$), 포도주(4.6억C\$), 바나나(2.3억C\$)등의 수입이 많음.

※ 캐나다는 기후조건상 열대성 식물은 거의 전량 수입으로 충당

- 주요 수입국가는 미국(90억C\$), EU(18억C\$), 멕시코(3.5억C\$), 브라질(3.7억C\$), 중국(1.6억C\$)등임.

2. 우리 농수산품의 對캐나다 수출증진 가능성

- 우리나라의 對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은 '98년 중 약 4천만캐나다달러 수준으로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당면, 감귤, 대추, 인삼, 김, 미역, 애완용 식품 등임.

- 캐나다통계기준('97) : 라면(5.7백만C\$), 당면·국수(1.9백만C\$), 감귤(1.3백만C\$), 대추·단감(1.1백만C\$), 애완용음식(0.9백만C\$), 인삼(0.8백만C\$), 김·미역(0.6백만C\$)

- 한국통계기준('98) : 라면(6.6백만미달러), 사과·배(1.0백만미달러), 기타과실(2.9백만미달러), 인삼류(0.6백만미달러), 밤(0.2백만미달러), 김(0.1백만미달러)

- 우리 농수산물은 교포 및 중국인, 일본인이 주 수요층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를 방문한 캐나다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교포, 중국인, 일본인을 주 수요층으로 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함이 바람직하며, 라면등과 같이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캐나다인 식성에 맞도록 제품 내용을 상이하게 제조함이 바람직함.

(주요 수출유망 품목)

- 기존 수출 주력품목인 라면, 인삼, 애완용 식품외에 배, 소주, 맥주, 포도주 등이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소주, 맥주, 포도주는 아직 수요층이 크지 않아 주류판매상(주정부 산하 기관임)이 비치·판매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수요 증가 시에는 주류판매상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삼계탕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현재 우리 농수산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검역 기준에 관해 협의중에 있음.
- 그 밖에, 현지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산 장미 등 일부 원예작물의 경우 한국산품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다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 마케팅 능력 및 지원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고 함.

3.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가. 수출유망 품목의 관세수준

-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관세(MFN) 및 일반 특혜관세(GPT)를 적용받고 있으며, GPT 대상품목은 MFN 관세보다 저렴한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나. 수입할당제

- 캐나다는 농수산물에 대해 '95년부터 할당관세(Tariff Rate Quota)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NAFTA, 미국-캐나다간 부화용 계란 및 병아리 협정도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 상위 쿼터를 적용

〈주요 품목별 관세율〉

품 목	HS번호	관 세 율
사 과	080810	무관세(단, HS 0808.10.90은 5%)
배	08082010	2.32센트/kg(단, 최소세율 8.5%)
	08082021	2.89센트/kg(단, 최소세율 10.5%)
감 굴	080520	무관세
단감·대추	081090	"
인 삼	121120	"
김·미역	121220	"
당면·국수	190219	0~5%
라 면 류	190230	0~10%
빵·과자류	190590	0~4%
간장류(양념)	210390	5~8%
활명수류	220210	7%
인삼·과일드링크	220290	0~11%(품목별로 세율 다양)
맥 주	220300	무관세
포 도 주	220429	리터당 3.08센트(알콜농도 13.7%미만)
포 도 주	220429	리터당 7.7센트~10.12센트 (알콜농도 13.7%~21.9%미만)
소 주	22060069	리터당 14.17센트

- ※ 주 : ① 맥주, 포도주, 소주 등 술종류는 알코올 도수, 재료, 원산지에 따라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② 주류의 경우 관세 이외에 물품세(Excise Tax), LCBO Make-up, 환경세 등의 부과로 통상 소매가격이 수입원가의 5~6배에 달하고 있음.
 ③ '99. 1. 1 발간 관세율표에 의거 작성

4. 기타 유의사항

- 라면, 인삼 등 일부제품은 중국 및 캐나다인도 선호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 농수산물의 주고객은 교포임.
- 따라서 수입수요 발굴도 교포무역인을 중심으로 하되, 라면, 인삼, 애완용 음식은 캐나

- 다 수입선도 병행하여 교섭함이 바람직함.
- 인삼, 라면 등은 중국산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한국산 배는 '97년 병충해가 발견되어 수출된 배가 반송·폐기된 사례가 있는 이후 캐나다 외무무역부 및 식품검역소 측과 수차례 협의

를 거쳐 사전예찰제도 도입 등 수출검역 요건에 합의함으로써 '98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재개되고 있음.

- 한국산배는 캐나다 식품검역관이 지정한 배산지(상주등 6개 단지)에서 생산된 배에 한해 한국 및 캐나다 양국검역소로부터 식품검역을 필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교포무역인에 의하면 동종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중요함.
- 한국내 수요가 없을 경우 또는 물량이 남을 경우만 수출을 하고 국내 직황이 나쁘거나 내수가 많을 경우 해외수출을 하지 않고 있어 주재국내 고객관리상 애로가 많음.

브 라 질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브라질은 밀, 쌀, 면화 및 채소, 과일 등의 농산물과 대구류, 연어, 새우 등의 수산물을 상당량 수입하고 있음.
- 농산물의 약 70%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상당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수산물 역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부터의 대구류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주요 수입품목은 '98년 기준으로 밀(2,574천톤), 채소 및 과일(871천톤), 쌀(1,701천톤), 면화(332천톤), 대구류(36천톤), 연어(5.7천톤) 등임.

2. 우리나라산 농수산물의 對브라질 수출증진 가능성

- 브라질은 부족한 농수산물의 대부분을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우리 농수산물은 운송료등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우리의 對브라질 수출가능 품목이 별로 없어 수출증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소량이긴 하나, 현재 계맛살, 라면 등이 수입 판매되고 있으므로 판촉활동에 따라 어느 정도 수출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통조림등 가공식품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3.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및 정책

- 평균 과세현황(증가세)

(단위 : %)

과세종류	농 산 물	수 산 물
수입관세(II)	15.0	13.0
공산품세(IP I)	22.5	30.0
유통세(ICMS)	17.5	17.5

* 자료원 : 브라질 재무부

* 주 : 1) 칠레, 스페인, 폴투갈,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과일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협정에 의거 관세 면제

2) 공산품세는 가공등 공산품화된 상품에 부과

-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 검역확인서 등이 필요

- 수입할당 : 없 음

독 일

1. 농수산물 수입시장 개요

- 독일의 농수산물 수입은 유형별로는 식물가공품(56%)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지역(72%)에서 수입되고 있음.

〈독일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제품 수입실적('97)〉

(단위 : 백만DM)

구 분	산 동 물	동물가공품	식품가공품	기 호 품	계
총 수 입	592	19,050	39,981	11,910	71,533
유 럽	573	16,074	29,205	5,732	51,584
아프리카	1	188	1,581	1,128	2,898
미 국	10	88	2,272	591	2,962
일 본	-	4	16	11	32
한 국	-	4	8	1	12

* 자료원 : 독일연방통계청 통계

2. 우리나라산 농수산물의 對독일 수출증진 가능성

- 현지에 진출한 해태 등 우리나라 식품수출업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가격경쟁력 부족, 장거리 수송에 따른 신선도 유지상의 어려움, 현지 독일과의 기호차이 등으로 인하여 현지 독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판매는 주로 교민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식품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시장이 협소하여 수출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수산 식품중 유일하게 독일시장에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

적을 올리는 품목은 “게맛살” 한품목임.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 게맛살 업체는 꾸준히 식품박람회 등에 참여하여 현지 바이어의 현황 및 시장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게맛살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가격하락의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임.

3. 농수산물 수입관련 제도

- 농수산물 수입시 관세등의 수입관련제도는 EU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EU는 농수산물 수입시 일정기간 동안 최저가격제 시행 및 가격에 따른 관세율의 조정 등 품목별로 다양한 수입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